

시험 방역관리 안내(6판) 개정전후대비표

〈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〉

| 쪽 | 현행(5판) | 6판 개정 | 개정사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|
| (공통) '코로나19 대응지침(지자체용) 13-1판' 현행화 반영 | | | |
| I. 개요 | | | |
| 1 | ○ (시험 연기, 취소) 시험 주최 기관이 준비 기간 및 시험 과정 중 방역 조치 시행 곤란한 경우 시험 연기, 취소 가능 | ○ (시험 연기, 취소) 시험 주최기관이 준비 기간 및 시험 과정 중 방역 조치 시행 곤란한 경우 시험 연기, 취소 가능 - 시험 연기 또는 취소 시 수험자에게 충분한 안내 필요 | ▶ 시험 연기, 취소시 수험자에게 안내가 필요함을 추가 |
| 3 | ○ (환기) 시험장은 하루에 3회 이상(최당 10분 이상) 주기적 환기 - 화장실은 상시 외부 환기 유지 - 냉·난방기, 공기청정기는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고 세기는 가능한 낮춰서 사용 | ○ (환기) 시험장은 하루에 3회 이상(최당 10분 이상) 주기적 환기 - 화장실은 상시 외부 환기 유지 - 냉·난방기, 공기청정기는 바람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고 바람 세기 및 필터는 기기 사용 설명서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 관리 | ▶ 슬기로운환기수칙(공기청정기편) 내용 반영 |
| 4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시험장 출입 관련 사전 고지사항 ></p> <p>(시험관리자 등 운영요원 및 수험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험장에서 전원 마스크 상시 착용,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, 철저한 손위생 안내 - 환자,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·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안내 -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간 증상 자율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안내 <p>(수험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증상 수험자의 경우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,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/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,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을 안내 - 시험시간에 점심이 포함되면 도시락, 개인 음용수 준비 안내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시험장 출입 관련 사전 고지사항 ></p> <p>(시험관리자 등 운영요원 및 수험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험장에서 전원 마스크 상시 착용,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, 철저한 손위생 안내 - 환자, 감염병의심자 등 현재 입원·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격리대상자는 시험장 출입금지 안내 ※ 격리명령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- 시험 시행일로부터 10일간 증상 자율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안내 <p>(수험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증상 수험자의 경우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 조치,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/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,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됨을 안내 - 시험시간에 점심이 포함되면 도시락, 개인 음용수 준비 안내 | ▶ 시험장 출입 관련 사전 고지사항에 격리 명령 위반시에 대한 법칙조항 추가 |

| 쪽 | 현행(5판) | 6판 개정 | 개정사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Ⅲ. 특별한 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| | | |
| 7 | <p>4. 면접시험 조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면접시험은 가급적 비대면 시험(화상 면접 등)을 권고 ○ 불가피하게 대면 면접시험이 필요한 경우 시험장 방역 기본방향 준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대기실) 대기장소의 수험자 간 간격을 1m 확보(좌우앞뒤)를 권장 - (면접실) 시험실(면접실)에는 투명 아크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수험자와 면접관 간 비말 감염 가능성 차단 | <p>4. 면접시험 조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면접시험은 가급적 비대면 시험(화상 면접 등)을 권고 ○ 불가피하게 대면 면접시험이 필요한 경우 시험장 방역 기본방향 준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대기실) 대기장소의 수험자 간 간격을 최소 1m 이상 확보(좌우앞뒤)를 권장 - (면접실) 시험실(면접실)에는 투명 아크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수험자와 면접관 간 비말 감염 가능성 차단, 면접실 내 환기는 1일 최소 3회, 10분 이상 맞동풍 환기 실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대기실 내 수험자 간격 명확히 표시 ▶ 슬기로운 환기수칙 내용 반영하여 면접실 내 환기 내용 추가 |
| 8 | <p>1. 특별한 상황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>※ 격리자등*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, 일반 시험장 방역보다 더 철저한 시험방역이 요구됨</p> <p>* 입원치료,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중인 사람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적용범위)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(시험)로 외출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(「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3조 별표2」)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>* (국가시험 등) 국가 및 공공기관(국가 및 공공시험 운영 위탁기관)에서 채용, 자격검정 등의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치르는 시험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격리자등은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, 국가시험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사유에 해당하면서, 시험 주최기관에서 시험 응시 기회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가능 * 시험 주최기관은 별도 시험실 준비 등 감염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치와 수험자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음 | <p>1. 특별한 상황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>※ 시험 주최기관은 시험 주기와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격리자등의 응시가 꼭 필요한 시험에 적용</p> <p>※ 격리자등*이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로 일반 시험장 방역보다 더 철저한 시험 방역이 요구됨</p> <p>* 입원치료,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중인 사람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적용범위)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(시험)로 외출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(「감염병예방법 시행령제23조별표2」)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10px;"> <p>* 시험 주최기관에서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시험 방역 사항을 철저히 마련하여 격리자등이 응시하게 한 시험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격리자등은 원칙적으로 시험장 출입이 금지되나, ①시험 주최기관이 시험 방역사항을 마련하고, ②관할 보건소장이 외출 허용한 경우 * 시험 주최기관은 별도 시험실 준비 등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방역 조치와 수험자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격리자등은 감염 전파 위험성이 있는 만큼,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을 무분별하게 허용하지 않고자, 시험 주최기관에서 시험의 중요도에 따라 허용하도록 내용 추가 ▶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 시험에 대한 근거를 지침을 통해 안내함 - 국가시험 등에 한정했던 외출사유 시험을 폭넓게 확대하여 시험 주최기관에서 시험 방역 사항을 철저히 마련한 시험이라면 외출 허용하도록 함(민간시험도 적용) |

| 쪽 | 현행(5판) | 6판 개정 | 개정사유 |
|---|--------|-------|------|
|---|--------|-------|------|

| | | | |
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9 | <p>2. 격리자등 외출 허용 절차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외출 허용 요청 관련 시기별 준비사항 ></p> | <p>2. 격리자등 외출 허용 절차</p> | <p>▶ 국가시험 외 외출 허용이 가능함에 따라 질병청에서 외출 허용하는 시험(정기 국가시험)과 관할 보건소(정기 국가시험 외)에서 외출 허용하는 시험에 대한 외출 허용 절차를 구분하여 도식화함</p> |
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
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|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|
| 9 | <p>○ (시험 주최기관)</p> <p>① 격리자등 시험 응시 가능 계획 공고 및 수험자 사전 알림 의무* 안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시험일이 격리 기간에 포함 시 ①보건소 담당자에게 본인이 수험자임을 알림, ②시험 주최기관에 확진/격리 통보 사실 알림 <p>② 보건소(또는 질병관리청)에 공문 등의 방법으로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(최소 시험 2주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외출 허용 요청시 시험 개요(시험명, 시험일시, 시험장소, 응시 대상) 및 방역조치 포함(붙임 8의 예시 참조) <p>③ 보건소의 외출허가 확인 및 격리자등에게 외출 허용 알람(외출허가 없을 시 외출 허용 요청한 기관에 외출 허용 여부 확인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수험자를 통해 수험자 중 확진/격리 대상자 여부 확인 및 명단 파악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시험 주최기관의 외출 허용 요청 기관 판단 기준의 수험자 단위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33%;">수험자의 단위</td> <td style="width: 33%;">전국단위*</td> <td style="width: 33%;">전국단위 외 시험**</td> </tr> <tr> <td>요청 기관</td> <td>관할 보건소 질병관리청(필요시)</td> <td>관할 보건소</td> </tr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수험자가 전국(5개 관할 보건소 이상)에 분포되어 있어 관할 보건소를 특정하기 어려워 질병관리청의 외출 허용 요청이 불가피한 경우 ** 수험자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관할 보건소를 특정하여 외출 허용 요청이 가능한 경우 | 수험자의 단위 | 전국단위* | 전국단위 외 시험** | 요청 기관 |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청(필요시) | 관할 보건소 | <p>□ 시험 주최기관</p> <p>① 격리자등 응시가 가능한 시험 방역 대책 수립 및 공문 등의 방법으로 관할 보건소(또는 질병청)에 격리자등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(최소 시험 2주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시험 개요(시험명, 시험일시, 시험장소, 관할 보건소, 응시 대상) 및 시험 방역조치 포함(시험장 구성, 수험자 관리체계 등) (붙임8 참고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외출 허용 요청 및 승인 기관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r> <td style="width: 33%;">주최기관</td> <td style="width: 33%;">국가·공공기관 및 민간기관</td> <td style="width: 33%;">국가기관</td> </tr> <tr> <td>요청기관</td> <td>시험 주최기관(시험 운영 위탁기관)</td> <td>정부부처(시험 운영 위탁기관)</td> </tr> <tr> <td>승인기관</td> <td>시험장(또는 시험 주최기관) 관할 보건소</td> <td>질병관리청**</td> </tr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시험장 관할 보건소가 2곳 이상인 경우 **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정기 국가시험 <p>② 관할 보건소(또는 질병청)의 격리자등의 시험 응시 허용 여부 확인</p> <p>③ 승인 시,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격리자등의 시험 응시 허용 및 수험자 사전 알림 의무* 안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시험일이 격리 기간에 포함 시 ①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본인이 수험자임을 알림, ②시험 주최기관에 확진/격리 통보 사실 알림 * 수험자 관리를 위해, 필요시 확진/격리 통보 사실을 시험 주최기관에 알리지 않을 시 조치사항(응시 제한·취소·무효 등) 포함 <p>④ 수험자에게 격리 관할 보건소에 외출 허용 요청이 필요함을 안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격리자등의 해당시험 응시가 허용됨을 안내(홈페이지 게재, 개별 연락 등) | 주최기관 | 국가·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| 국가기관 | 요청기관 | 시험 주최기관(시험 운영 위탁기관) | 정부부처(시험 운영 위탁기관) | 승인기관 | 시험장(또는 시험 주최기관) 관할 보건소 | 질병관리청** | <p>▶ '시험 주최기관'이 격리자등의 시험 목적 외출 허용 받기 위한 절차 추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험 주최기관은 격리자등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역사항을 마련 - 보건소 또는 질병청에 격리자등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 - 격리자등의 시험 응시 가능 허용 시, 수험자 안내사항 추가 |
| 수험자의 단위 | 전국단위* | 전국단위 외 시험**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요청 기관 |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청(필요시) | 관할 보건소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주최기관 | 국가·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| 국가기관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요청기관 | 시험 주최기관(시험 운영 위탁기관) | 정부부처(시험 운영 위탁기관)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승인기관 | 시험장(또는 시험 주최기관) 관할 보건소 | 질병관리청**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| 쪽 | 현행(5판) | 6판 개정 | 개정사유 |
|-----------|--|---|---|
| 10 | <p>○ (보건소 담당자) 외출 허용 수험자의 시험장 이동에 대해 사전 협의*</p> <p>* 지자체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가능하며, 시험방역 관련 업무 분장(수험자 이동방법 협의, 이동통선 모니터링 등)을 명확히 하여야 함</p> <p>- (보건소 승인) 시험 주최기관에서 격리자들의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 시 방역조치 포함 시험개요 확인 및 전자직 방법(전화, 우편,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전송, 홈페이지 게재 등)으로 외출 허용</p> <p>- (질병청 승인) 질병관리청의 외출 허용 통보 공문 또는 주최기관에서 받은 질병관리청의 외출 허용 통보 공문 수령 즉시 시험목적 외출 허용 안내사항 등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</p> | <p>□ 시험장(또는 시험 주최기관) 관한 보건소</p> <p>① 시험 주최기관의 시험 방역 대책 검토(필요시 현장점검)</p> <p>* (검토사항) 코로나19 감염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험장 구성 및 수험자 관리체계 등 마련 여부를 확인(공문 등)</p> <p>② 시험 주최기관에 격리자들의 해당시험 응시 허용 통보(공문 등)(붙임9 참고)</p> <p>* 시험 방역 대책 미흡 등으로 격리자들의 응시가 불가한 경우, 시험 주최기관에 외출 허용 불가 통보(유선 등)</p> <p>- 해당시험의 격리자등 응시 허용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</p> | <p>▶ ‘시험장 또는 시험 주최기관 관할보건소’의 시험 주최기관의 시험 방역 대책 검토하여 격리자들의 시험응시 가능 여부 판단 절차 추가</p> |
| 10 | <p>○ (격리자등 수험자) 외출 시 외출허용 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</p> <p>① 격리자들의 응시를 계획한 시험인지 주최기관의 공고 등을 통해 확인(아닐시, 격리자등은 시험 응시 불가)</p> <p>② 시험일이 격리 기간에 포함 시, 보건소 담당자 및 시험 주최기관에 알림</p> <p>③ 관할 보건소의 문자 또는 홈페이지 등에 시험 목적의 외출 허용 여부 확인</p> | <p>□ 격리자등 수험자</p> <p>① 시험일이 격리 기간에 포함 시, 격리 관할 보건소 및 시험 주최기관에 알림</p> <p>② 해당시험이 격리자들의 응시 허용 시험인지 시험 주최기관의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확인(아닐시, 격리자등은 시험 응시 불가)</p> <p>③ 격리 관할 보건소에 외출허용 요청 및 외출허용 승인 확인</p> <p>* 시험장(또는 시험 주최기관) 관할 보건소의 격리자들의 시험 응시 허용 근거</p> <p>④ 외출 전, 주의사항 숙지 및 격리 관할 보건소에 외출 사실(이동경로 및 수단포함)을 통보(유선 등)</p> <p>⑤ 외출 시,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필시 지참</p> <p>* 허용되는 범위 외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</p> | <p>▶ ‘격리자등 수험자의 시험 목적 외출 허용을 위한 절차 추가(외출 시 주의사항 포함)</p> |
| 10 -11 | <p><신설></p> | <p>□ 격리자등 관할 보건소</p> <p>①-1 수험자가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요청 시,</p> <p>- 시험장(또는 시험 주최기관) 관한 보건소의 격리자등 응시 허용을 근거로 외출 허용(붙임10 참고)</p> <p>- 또는 시험 주최기관의 시험 방역 대책을 검토하여 개별 외출 허용(붙임11 참고)</p> <p>①-2 질병관리청의 외출 허용 통보 공문 수령 즉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해당시험 개제를 통해 외출 허용</p> <p>② 전자적인 방법(전화, 우편, 전자우편, 휴대전화 문자전송, 홈페이지 게재 등)으로 시험목적 외출 허용 및 외출 시 주의사항 등 통보</p> <p>* 외출 허용이 불가한 경우 외출 허용 불가 통보(유선 등)</p> | <p>▶ ‘격리자등 관할 보건소’의 외출 허용 절차 신설</p> <p>- 시험장 또는 시험 주최기관 관할 보건소의 격리자등 응시 허용 근거 외출 허용</p> <p>- 개별 외출 허용</p> <p>- 질병청의 외출 허용</p> |

| 쪽 | 현행(5판) | 6판 개정 | 개정사유 |
|----|--|---|--|
| 11 | <p><신설></p> | <p>■ 시험종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활용에 따른 종류) 입학시험, 국가·공공 민간기관 등 구직을 위한 시험, 국가 민간 자격시험, 언어·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등 - (방법에 따른 종류) 구두, 필기, 실기, 체력, 논술, 면접 등 <p>■ 외출 허용이 필요한 시험</p> <p>시험 횟수 제한, 일정조정 불가, 시험의 중요도, 시험 방법 등을 고려하여 격리자등이 외출하여 응시가 필요한 시험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 외출 허용 시험 (예시) ></p> <p>※ 시험 주최기관에서 시험 방역 상황을 철저히 마련하고, 관할 보건소장이 격리자등의 응시를 허용한 시험</p> <p>▶ 정기 국가시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용(국가공무원법, 공무원임용령) 시험, 국가 기술·전문자격(자격기본법) 시험, 학교시험,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, 입학시험 등 * 주기를 일정하게 계획하며 정기적으로 치르는 시험 <p>▶ 정기 국가시험 외 시험(비정기 국가시험 포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구직을 위한 시험, 공인 민간 자격(자격기본법) 시험, 공인 언어능력평가시험 등 * 17개 부처청의 95개 종목(민간자격정보서비스, '23.1.1.기준) </div> | <p>▶ 외출 허용이 필요한 시험에 대한 설명과 외출 허용 기관 구분에 따른 시험 종류 예시를 추가</p> |
| 12 | <p>3. 격리자등 방역관리 방안(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 외 추가 필요 사항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시험 주최기관 사전 준비사항</p> <p>○ (격리자등 확인) 수험자를 통해 시험실 입실대상자 확인 및 모니터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시험 운영기관(위탁기관)은 시험 응시지원자 중 확진 수험자* 여부 확인을 위해 질병관리청에 협조 요청 공문 시행 가능 * (필수) 성명, 생년월일 6자리, 연락처, (추가) 주소(상세주소) 포함 | <p>3. 격리자등 방역관리 방안(시험장 방역 기본 조치 외 추가 필요 사항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시험 주최기관 사전 준비사항</p> <p>○ (격리자등 확인) 수험자 사전알림 의무 등을 통해 격리자등의 수험자 확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시험일이 격리기간에 포함 시, 수험자가 시험 주최기관에 알릴 방법 안내 | <p>▶ 확진 수험자 여부 확인을 위해 질병청에 명단조회 협조요청 사항 삭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험자 사전알림 의무 안내를 통해 시험 주최기관에서 격리자등을 확인하도록 변경 |

| 쪽 | 현행(5판) | 6판 개정 | 개정사유 |
|----|---|---|--|
| 13 | <p>4. 격리자들의 이동 시 방역 조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이동방법) 반드시 도보, 자차(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), 방역택시 등을 이용(대중교통 이용 금지) 및 방역수칙* 준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KF94 등급이상 마스크 항상 착용,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, 시험장소로 직행 등 - (자차) 격리자들이 아닌 가족 또는 지인이 운전해야 하는 경우 운전자는 예방접종완료자*여야 하며 운전자 및 격리자등 외 탑승자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동거가족인 확진자와 격리자가 함께 이동 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○ (외출시간) 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(이동시간 포함)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| <p>4. 격리자들의 이동 시 방역 조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이동방법) 반드시 도보, 자차(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), 방역택시 등을 이용(대중교통 이용 금지) 및 방역수칙* 준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KF94 등급이상 마스크 항상 착용,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, 시험장소로 직행 등 - (자차) 격리자들이 아닌 가족 또는 지인이 운전해야 하는 경우 운전자는 예방접종완료자*여야 하며 운전자 및 격리자등 외 탑승자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동거가족인 확진자와 격리자가 함께 이동 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○ (외출시간) 해당 시험에 소요되는 시간(이동시간 포함)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허용되는 범위 외 이탈이 사후에 확인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격리자들의 이동시 자차 운전자의 조건을 삭제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실성 반영(예방접종 완료자 개념의 불명확화로 삭제) ▶ 벌칙조항 내용 추가 |

붙임

| | | | |
|--|--|--|--|
| | | <p>붙임 4 호흡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수칙(2종)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</div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<붙임4> '슬기로운 환기 수칙' 현행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공기청정기 편' 추가 |
|--|--|--|--|

| 쪽 | 현행(5판) | 6판 개정 | 개정사유 |
|----|--|--|---|
| 26 | <p>■ 시험 응시 격리대상 수험자 이동 시 준수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시험장 이동방법은 모니터링 담당자(전담공무원)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 ◦ 모니터링 담당자 동행 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합니다. ◦ 모니터링 담당자 미동행 시 대중교통이용은 불가하며, 도보·자차·방역택시 등을 이용합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험장 출발, 시험장 도착, 시험종료, 격리지 복귀 시(총 4회)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연락합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모니터링 담당자와 상의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- 자차 이동 시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합니다. - 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(운전자와 대각선)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. -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,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. ◦ 격리 장소에서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(KF94 등급 이상)를 착용하고, 외출 중 벗지 않으며, 손위생을 위해 필요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◦ 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·물을 준비해주세요. ◦ 이동 중 식당, 휴게소,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으며,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, 바로 시험장으로 갑니다. ◦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격리자 전용 화장실만 이용해주세요. ◦ 고사장까지 이동 중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,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. ◦ 고사장 전과 후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위생을 합니다. ◦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며, 바로 격리 장소로 돌아옵니다. <p>※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</p> | <p>■ 시험 응시 격리대상 수험자 이동 시 준수사항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외출 전 준비사항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시험 주최기관에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가능 여부 확인합니다. ◦ 관할 보건소에 외출 허용 요청 및 외출 사실 통보(이동경로 및 수단)합니다. ◦ 외출 전, 외출 시 주의사항을 숙지합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보건소 안내 또는 시험 주최기관의 홈페이지 안내문 참조 ◦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 여유분, 일회용 장갑, 손소독제, 소독용 티슈, 종량제 봉투 등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. ◦ 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·물을 준비합니다.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bottom: 5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외출 중 주의사항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점을 상시 상기하여 주의합니다. ◦ 격리장소를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(KF94 등급 이상)를 착용하고, 외출 중 벗지 않으며, 마스크 착용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착용합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마스크 탈의가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야외에서 타인과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에서 잠시(약 5분 내외) 탈의할 수 있습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호흡곤란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, 안정시까지 ◦ 시험장 이동 시 도보·자차·방역택시 등을 이용합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차 이동 시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합니다. - 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(운전자와 대각선)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. -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,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. ◦ 이동 중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, 바로 시험장으로 갑니다. ◦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격리자 전용 화장실만 이용해주세요. ◦ 타인과 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,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. ◦ 손소독은 수시로 하며, 사용한 물품 등은 자가 소독합니다. ◦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, 바로 격리 장소로 돌아옵니다. ◦ 외출 동안 발생한 쓰레기는 격리장소로 가져와야 하며, 소독 후 격리해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. 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외출 후 주의사항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외출 동안 발생한 쓰레기를 담은 종량제 봉투는 외부로 다시 한번 소독 후 보관, 격리 종료 후 배출합니다. <p>※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</p> </div> | <p>▶ <붙임7> 시험 응시를 위한 격리대상자의 외출 시 주의사항 내용 추가 - 외출 전 중, 후 주의사항으로 세분화하여 준수사항 추가</p> |

| 쪽 | 현행(5판) | 6판 개정 | 개정사유 |
|-----------|--------|---|---|
| 28 -31 | |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bottom: 5px;"><small>시험 주최기관(또는 정부부처) 작성</small>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bottom: 5px;">붙임 8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(예시)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bottom: 5px;"><small>시험장(또는 시험 주최기관) 관할 보건소 작성</small>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bottom: 5px;">붙임 9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시 안내사항(예시)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bottom: 5px;"><small>격리대상자 관할 보건소 작성</small>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 margin-bottom: 5px;">붙임 10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시 안내사항(예시1)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bottom: 5px;"><small>격리대상자 관할 보건소 작성</small>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붙임 11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목적 외출 허용 시 안내사항(예시2)</div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<붙임8> 시험 주최기관의 '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요청(예시)' 추가 ▶ <붙임9> 시험 주최기관의 시험 방역 사항을 검토하여 관할 보건소가 작성 '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시 안내사항(예시)' 추가 ▶ <붙임10,11> 격리 관할 보건소가 작성 '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허용 시 안내사항(예시)' 추가 |